

「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」 신규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관세법」 제38조, 제38조의2, 제38조의3, 제38조의4, 제39조,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, 제106조, 제106조의2, 제110조, 제110조의2, 제110조의3,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,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 제16조 등에서 납세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,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납세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42조의2, 제46조부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○ 「관세법」에 가산세 감면신청 조항(제42조의2)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사항 반영
제10조(보정신청) ① (생략) ②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수입·납세신고 정정승인(신청)서를 납세신고를 할 때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	제10조(보정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	○ 문구 수정(다른 호와 통일) - 납세의무자의 신청 행위에 대하여 세관장이 하는 사실행위가 '보정'에 해당하는 바, 문구 수정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세관장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1. 다수의 세관장에게 신고한 납세신고건을 한꺼번에 <u>보정하는</u> 경우: 다수의 세관장 중 어느 하나의 세관장</p> <p>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③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세액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부족한 <u>세액</u>을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부족세액에 대하여는 「관세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</p>	<p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보정신청 하려는</u>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세관장으로부터 납세오류 정보를 제공 받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을 통지 받은 경우: 해당 정보 등을 제공·통지한 세관장</u>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세액(이하 "부족세액"이라 한다)을</u> ----- -----</p>	<p>○ 각종 세액점검 제도 활용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</p> <p>- ①납세오류 정보 또는 ②보정신청을 안내* 받은 경우, 한 세관장에게 일괄하여 민원신청(보정신청, 수정신고)이 가능하도록 허용</p> <p>* 여러 세관에 납세신고한 분에 대하여 이중 하나 또는 다른 세관장으로부터 보정신청 통지 등을 받은 경우</p> <p>○ 문장 정비(약칭 표현)</p>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<p>라 한다) 제9조의3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을 한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<u>부족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법 제41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한다.</u></p>	<p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 <u>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(채납된 세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해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</u> -----.</p>	<p>○ 「관세법」 제41조(가산금) 삭제 및 제42조(가산세) 개정 사항* 반영</p> <p>*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</p> <p>- 채납한 보정신청 세액(보정이자는 제외)을 대상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</p>
<p>제11조(수정신고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<u>부족세액(가산세를 포함한다)을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부족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<u>법 제41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한다.</u></p>	<p>제11조(수정신고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부족세액과 제2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를</u>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 <u>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에 대해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</u> -----.</p>	<p>○ 「관세법」 제41조(가산금) 삭제 및 제42조(가산세) 개정 사항 반영</p> <p>- 채납한 수정신고 세액(가산세는 제외)을 대상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</p>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유
<p>제19조(보정신청 통지 및 경정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부족세액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9조의3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족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 제41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.</p>	<p>제19조(보정신청 통지 및 경정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금액(이하 “보정이자”라 한다)을 ---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 <u>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미납부세액에 대해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</u> -----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장 정비(약칭 표현) ○ 「관세법」 제41조(가산금) 삭제 및 제42조(가산세) 개정 사항 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체납한 보정신청 세액(보정이자 제외)을 대상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
<p>제31조(환급액) <u>계약내용 상이 물품 등에 대한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전액(해당 물품에 부과된 가산세, 가산금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으로 한다.</u></p>	<p>제31조(환급액) ----- <u>수출물품 등에</u> ----- --- 등(법 제97조제4항, 제98조제2항, 제241조제4항·제6항 및 제253조제4항에 따른 <u>가산세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전액으로 하며, 그 물품의 일부만을 수출하거나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관세법」 제41조(가산금) 삭제 및 제42조(가산세) 개정 사항 반영 ○ 대법원 판결(대법원 2015두52616 등)을 수용해 관련 조문 정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유
	<p><u>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 및 내국세 등으로 --.</u></p>	<p>되는 가산세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적으로 본세에 부족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환급대상에 포함</p> <p>○ 수입물품 중 일부만을 수출한 경우 등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관세 등만을 환급함을 명확히 표현</p>
<p>제35조(환급액) 수출을 갈음한 폐기물품에 대한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전액으로 한다. 다만, 폐기에 따른 잔존물에 대하여는 그 폐기한 때의 해당 잔존물의 성질, 수량 및 가격에 따라 부과될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</p>	<p>제35조(환급액) ----- ----- ----- 하며, <u>그 물품의 일부만을 폐기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 및 내국세 등으로 한다.</u> ----- -----.</p>	<p>○ 수입물품 중 일부만을 폐기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관세 등만을 환급함을 명확히 표현</p>
<p>제49조(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세 신청) ① <u>법 제38조의2제5항, 시행령 제32조의4제5항,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5항에 따라 보정이자 또는 가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산세(보정이자)면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</u></p>	<p>제49조(가산세 감면 및 보정이자 면세 신청) ① <u>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, 제42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32조의4제7항 및 제39조제5항에 따른 보정이자 및 가산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산세 감면(보정이자 면제) 신청서에 따른다. 다</u></p>	<p>○ 「관세법」 제42조(가산세) 및 제42조의2(가산세의 감면) 개정 사항 반영</p> <p>- 이와 함께 일부 가산세 감면 사유에 대하여는 신청절차를 간소화*</p> <p>* '가산세 감면 신청서' 제출 대신 '수입·납세 신고 정정승인(신청서)'에 가산세 감면부호를 기재하는 방식</p>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유
<p><u>야 한다. <단서 신설>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<u>가산세(보정이자) 면제 신청서를</u> 제출받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<u>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</u>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결과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.</p>	<p><u>만, 법 제42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6호</u> <u>까지에</u> 해당하여 <u>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에</u> 따른 <u>수입·납세신고 정정승인(신청)서에</u> <u>가산세 감면부호를 기재하여</u> <u>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</u> 간이하게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----- <u>가산세 감면(보정이자 면제) 신청서를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	
<p>제53조의2(환특법 환급금의 제세 부담) ① 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특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우선 부담할 수 있으며, 부담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청자에게 지급한다.</p>	<p>제53조의2(환특법 환급금의 제세 부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<p>1. 체납된 관세등(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) 과 <u>가산금, 가산세</u> 및 체납처분비</p> <p>2. 「관세법」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 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② ~ ③ (생 략)</p>	<p>1. ----- - <u>가산세</u> -----</p> <p>2. <u>다음 각 목의 금액</u></p> <p>가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나. 환특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「관세법」 제41조(가산금) 삭제 및 제42조(가산세) 개정 사항 반영</p> <p>○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 제16조제4항 개정 사항 반영</p>
<p>제55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20년 1월 1일</u>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<u>12월 31일까지</u>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55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<u>2020년 7월</u> ----- ----- <u>6월</u> ----- <u>30일까지</u> ----- -----.</p>	
<p><신 설></p>	<p>부 칙 <관세청고시 제2020-15호(2020. 5. 8.)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</p>	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	<p><u>제2조(가산금 및 가산세에 대한 경과조치)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 한 분에 대한 가산금 및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10조제4항, 제11조제4항, 제19조제4항 및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/u></p>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(별지 제1호서식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료제출요구</p> <p>문서번호 : 000-00-자료제출-00-일련번호 발행일자: yyyy.mm.dd 수신처(신고자) : (상호) ×××××××××× (성명) ×××××× (납세자 상호 대표)</p> <p>신고일자 : yyyy-mm-dd 신고번호(란) :</p> <hr/> <p>제출요구자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견품 또는 견품 카탈로그, 견품사진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물품의 기능 및 용도설명서, 기기 구성도 <input type="checkbox"/> 구매계약서 (Contract of Sale) 또는 약정서 <input type="checkbox"/> 물품매도확약서 (Offer sheet)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장 또는 D/A 계약서 사본 <input type="checkbox"/>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된 가산요소(수수료, 포장비, 생산지원금액, 권리사용료)의 지급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 계약서(해당물품에 한함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세관장이 세액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(구체적으로 명기) <hr/> <p>요구사유</p> <p>오류예상유형 : 신고내역 : 검토사항 :</p> <p>추첨트사함에 동의하는 경우 납부한 날로부터 8개월 이내의 경우 세액보정신청(가산세 면제, 가산금 부과), 납부한 날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승정신고할 수 있습니다.</p> <hr/> <p>관세법 제113조제2항 및 제26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취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므로 yyyy-mm-dd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만, 보정 또는 승정신고시 제출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</p> <p>취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신고인으로 지정되거나 관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,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 가능일자를 미리 우리세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제출요구 부서: OO세관 OO과 담당 과 장 : OOO (서명 또는 날인) 담당 자 : OOO (서명 또는 날인) 연락처(전화) : 9999-999-9999 FAX : 999-999-9999 주 소 :</p>	<p>(별지 제1호서식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료제출요구</p> <p>문서번호 : 000-00-자료제출-00-일련번호 발행일자: yyyy.mm.dd 수신처(신고자) : (상호) ×××××××××× (성명) ×××××× (납세자 상호 대표)</p> <p>신고일자 : yyyy-mm-dd 신고번호(란) :</p> <hr/> <p>제출요구자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견품 또는 견품 카탈로그, 견품사진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물품의 기능 및 용도설명서, 기기 구성도 <input type="checkbox"/> 구매계약서 (Contract of Sale) 또는 약정서 <input type="checkbox"/> 물품매도확약서 (Offer sheet)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장 또는 D/A 계약서 사본 <input type="checkbox"/>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된 가산요소(수수료, 포장비, 생산지원금액, 권리사용료)의 지급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 계약서(해당물품에 한함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세관장이 세액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(구체적으로 명기) <hr/> <p>요구사유</p> <p>오류예상유형 : 신고내역 : 검토사항 :</p> <p>추첨트사함에 동의하는 경우 납부한 날로부터 8개월 이내의 경우 세액보정신청, 납부한 날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승정신고할 수 있습니다.</p> <hr/> <p>관세법 제113조제2항 및 제26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취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므로 yyyy-mm-dd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만, 보정 또는 승정신고시 제출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</p> <p>취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신고인으로 지정되거나 관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,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 가능일자를 미리 우리세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제출요구 부서: OO세관 OO과 담당 과 장 : OOO (서명 또는 날인) 담당 자 : OOO (서명 또는 날인) 연락처(전화) : 9999-999-9999 FAX : 999-999-9999 주 소 :</p>	<p>○ “가산금” 등 불필요한 문구 정비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(별지 제12호서식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가산세(보정이자)면제 신청서</th> <th>처리기간 20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납세의무자</td> <td>①성명</td> <td rowspan="2">②사업자등록번호(또는 주민등록번호)</td> </tr> <tr> <td>③상호</td> <td>④전화번호</td> </tr> <tr> <td>⑤주소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⑥면제종류</td> <td colspan="2"><input type="checkbox"/> 보정이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</td> </tr> <tr> <td>⑦수입신고번호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tr> <td>⑧면제받을 금액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tr> <td>⑨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32조4제5항 및 제39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(보정이자) 면제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○○ 세관장 귀하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구비서류 : 관계증명자료</td> <td>수수료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※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.</td> <td>없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가산세(보정이자)면제 신청서		처리기간 20일	납세의무자	①성명	②사업자등록번호(또는 주민등록번호)	③상호	④전화번호	⑤주소		⑥면제종류	<input type="checkbox"/> 보정이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		⑦수입신고번호			⑧면제받을 금액			⑨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			「관세법 시행령」 제32조4제5항 및 제39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(보정이자) 면제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○○ 세관장 귀하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구비서류 : 관계증명자료		수수료	※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.		없음	<p>(별지 제12호서식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가산세 감면(보정이자 면제) 신청서</th> <th>처리기간 20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납세의무자</td> <td>①성명</td> <td rowspan="2">②사업자등록번호(또는 주민등록번호)</td> </tr> <tr> <td>③상호</td> <td>④전화번호</td> </tr> <tr> <td>⑤주소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⑥신청종류</td> <td colspan="2">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 감면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정이자 면제</td> </tr> <tr> <td>⑦감면사유(가산세)</td> <td colspan="2"> 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절차부심사 결정·통지 지연 (법 §40의2①7호)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당한 사유 (법 §40의2①8호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 </td> </tr> <tr> <td>⑧수입신고번호</td> <td colspan="2">※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불응 가능</td> </tr> <tr> <td>⑨감면(면제) 받을 금액</td> <td colspan="2">※ 수입신고별 구분</td> </tr> <tr> <td>⑩정당한 사유 등 감면(면제)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</td> <td colspan="2">※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불응 가능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5항 및 제32조4제7항에 따라 가산세 감면(보정이자 면제)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○○ 세관장 귀하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구비서류 : 입증자료</td> <td>수수료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</td> <td>없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가산세 감면(보정이자 면제) 신청서		처리기간 20일	납세의무자	①성명	②사업자등록번호(또는 주민등록번호)	③상호	④전화번호	⑤주소		⑥신청종류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 감면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정이자 면제		⑦감면사유(가산세)	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절차부심사 결정·통지 지연 (법 §40의2①7호)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당한 사유 (법 §40의2①8호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		⑧수입신고번호	※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불응 가능		⑨감면(면제) 받을 금액	※ 수입신고별 구분		⑩정당한 사유 등 감면(면제)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	※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불응 가능		「관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5항 및 제32조4제7항에 따라 가산세 감면(보정이자 면제)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○○ 세관장 귀하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구비서류 : 입증자료		수수료			없음	<p>○ 법령 개정 사항등을 반영해 양식 변경</p>
가산세(보정이자)면제 신청서		처리기간 20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납세의무자	①성명	②사업자등록번호(또는 주민등록번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③상호		④전화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⑤주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⑥면제종류	<input type="checkbox"/> 보정이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⑦수입신고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⑧면제받을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⑨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관세법 시행령」 제32조4제5항 및 제39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(보정이자) 면제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○○ 세관장 귀하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비서류 : 관계증명자료		수수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※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.		없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산세 감면(보정이자 면제) 신청서		처리기간 20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납세의무자	①성명	②사업자등록번호(또는 주민등록번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③상호		④전화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⑤주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⑥신청종류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 감면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정이자 면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⑦감면사유(가산세)	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절차부심사 결정·통지 지연 (법 §40의2①7호) <input type="checkbox"/> 정당한 사유 (법 §40의2①8호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⑧수입신고번호	※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불응 가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⑨감면(면제) 받을 금액	※ 수입신고별 구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⑩정당한 사유 등 감면(면제)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	※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불응 가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관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5항 및 제32조4제7항에 따라 가산세 감면(보정이자 면제)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○○ 세관장 귀하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비서류 : 입증자료		수수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없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

(별지 제14호서식)

(별지 제14호서식)

처리기간
7일

관세 등 환급금 총당 신청서

환급신청인	상호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	주민등록번호
	주소(사업장)	

관세 등 환급금 (가)	환급신청번호	환급신청일	관세	내국세	가산금	합계
		XXX-XX-XXXXXX	YYYY.MM.DD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	XXX-XX-XXXXXX	YYYY.MM.DD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	XXX-XX-XXXXXX	YYYY.MM.DD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	XXX-XX-XXXXXX	YYYY.MM.DD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	XXX-XX-XXXXXX	YYYY.MM.DD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
관세 등 환급금 미납액 (나)	수입신고번호	수입신고일	관세	개발소비세	주세	고통세
	등록세	그중세	부가가치세	가산금	합계	
	XXXXXXXX-XX-XXXXXX	YYYY.MM.DD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	XX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	XXXXXXXX-XX-XXXXXX	YYYY.MM.DD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	XX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	XXXXXXXX-XX-XXXXXX	YYYY.MM.DD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	XX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	XXXXXXXX-XX-XXXXXX	YYYY.MM.DD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	XX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
관세 등 환급금 (가)	총당금액 (나)	총당후 잔액 (가-나)
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

본인이 귀 세관에 환급신청한 환급금(가)을 본인의 관세 등 미납세액(나)에 대하여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 제16조제 4항에 따라 총당신청 하오니 총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고인 20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
○○세관장 귀하

접수서류 일련	일련	주부	과감
------------	----	----	----

※ 부속사항: 환급금(가)와 미납세액(나)의 나비치 모든 교부서는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10㎝ × 297㎝ [인쇄용지 60g/㎡]

개정안

(별지 제14호서식)

(별지 제14호서식)

처리기간
7일

관세 등 환급금 총당 신청서

환급신청인	상호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	주민등록번호
	주소(사업장)	

관세 등 환급금 (가)	환급신청번호	환급신청일	관세	내국세	가산금	합계
		XXX-XX-XXXXXX	YYYY.MM.DD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	XXX-XX-XXXXXX	YYYY.MM.DD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	XXX-XX-XXXXXX	YYYY.MM.DD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	XXX-XX-XXXXXX	YYYY.MM.DD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	XXX-XX-XXXXXX	YYYY.MM.DD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
관세 등 환급금 미납액 (나)	수입신고번호	수입신고일	관세	개발소비세	주세	고통세
	등록세	그중세	부가가치세	가산금	합계	
	XXXXXXXX-XX-XXXXXX	YYYY.MM.DD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	XX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	XXXXXXXX-XX-XXXXXX	YYYY.MM.DD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	XX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	XXXXXXXX-XX-XXXXXX	YYYY.MM.DD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	XX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	XXXXXXXX-XX-XXXXXX	YYYY.MM.DD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	XX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	999,999,999.999

관세 등 환급금 (가)	총당금액 (나)	총당후 잔액 (가-나)
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

본인이 귀 세관에 환급신청한 환급금(가)을 본인의 관세 등 미납세액(나)에 대하여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 제16조제 4항에 따라 총당신청 하오니 총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고인 20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
○○세관장 귀하

접수서류 일련	일련	주부	과감
------------	----	----	----

※ 부속사항: 환급금(가)와 미납세액(나)의 나비치 모든 교부서는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10㎝ × 297㎝ [인쇄용지 60g/㎡]

개정사유

○ “가산금” 문구 삭제